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09 호 2019. 12. 19.(목)

선	기 관 의 장
람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4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4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5호[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7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1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2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4호[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7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345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27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63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복지지원과, 교통행정과 및 안전정보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경제국	국 합계		132		
	복지지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8급	7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5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안전건설국	국 합계		127		
	안전정보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2, 시설1, 전산1, 방송통신2
			7급	11	행정3, 전산2, 시설2, 방송통신4
			8급	8	행정2, 행정/시설1, 전산2, 시설1, 방송통신1, 임기제방재안전1
			9급	3	방송통신1, 행정/임기제 행정2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운전1
			8급	4	행정3, 행정/시설1
			9급	1	행정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사무 위탁에 따른 감축정원 재배치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615명(변동 없음)
- 나. 부서별 정원 조정 : 복지지원과 운전 7급 → 교통행정과 재배치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64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정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121명”을 “11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 등의 정원표(제5조 관련)

부 서 별	계	공무직				청 경 원 찰
		사 무 실 무 원	전 문 실 무 원	시 설 관 리 원	환 경 미 화 원	
합 계	119			65	50	4
주민소통실	4			4		
총 무 과	6			6		
문화체육과	3			3		
도 서 관 과	8			8		
징 수 과	2			2		
복지지원과	3			3		
사회복지과	1			1		
가족정책과	5			5		
농 수 산 과	3			3		
환경미화과	51			1	50	
건 설 과	8			6		2
도 시 과	2			1		1
공원녹지과	3			3		
교통행정과	3			3		
건축주택과	2			1		1
보 건 소	9			9		
문화예술회관	3			3		
의회사무과	1			1		
농 소 2 동	1			1		
강 동 동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자원봉사센터 사무 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파견 공무원 복귀에 따른 부서 정원 감축
- 나. 공무원 직군 단일화를 위한 부서 정원 조정
- 다. 교통단속업무 일반직 배치에 따른 정원 이관

2. 주요내용

가. 정수의 총수 : 119명(121명 → 119명, 정수 △2)

나. 부서별 정원 조정

1) 자원봉사센터 사무 위탁에 따른 정원 감축

- 복지지원과(희망복지지원) △1

2) 시설관리공단 파견 공무원 복귀에 따른 정원 감축

- 문화체육과(체육지원) △1

3) 공무원 직군 단일화에 따른 부서 정원 조정

- 사회복지과(전문실무원) △1 → 사회복지과(시설관리원) 증1
- 가족정책과(전문실무원) △1 → 가족정책과(시설관리원) 증1
- 환경미화과(전문실무원) △1 → 환경미화과(시설관리원) 증1

4) 교통단속업무 일반직 배치에 따른 정원 이관

- 교통행정과(교통지도) △1 → 농수산과(꽃도시조경) 증1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 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울산광역시 복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의 관리 및 취소 등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세부지원방안을 명확히 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 적용 범위 등(제1조 ~ 제3조)
- 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등(제4조 ~ 제5조)
- 지원내용(제6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제7조)
- 수사 기관 등 의견서 제출(제8조)
- 지원신청, 지원 절차 안내 등(제9조 ~ 제10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제11조)
- 위원회 상정·심의(제12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3조)
- 자료제출(제14조)
- 보고(제15조)
- 지원의 취소(제16조)
- 변호인 보수의 반환(제17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51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신명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서호건설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동대로 130(신천동,3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인공구조물(현장사무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안동 1059-1번지

나. 면적 : 125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당초 : 2018. 07. 16. ~ 2019. 12. 31.

변경 : 2018. 07. 16. ~ 2020. 06. 1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12. 9.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배수관로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매곡동 795-314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14m²
영구 : 2m²
 - 나. 기 간 - 일시 : 2019. 12. 09. ~ 2020. 12. 31.
영구 : 2021. 01. 01. ~ 202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감상백
 -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토용길24번길 26 ,102호(용강동,보문빌리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5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복구(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명 칭 :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8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당초) A=9,397m² (변경) A=9,401m²

(당초) 오토캠핑장: 8,087m², 도로(가감속차로) : L=96m, B=6m(A=1,310m²)

(변경) 오토캠핑장: 8,091m², 도로(가감속차로) : L=96m, B=6m(A=1,31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당초) 2018. 11. 22. ~ 2019. 11.

(변경) 2018. 11. 22.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계	부지	진입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당사동	28-3	도	6,017	542		542	울산광역시 북구					
2	당사동	71-2	전	369	369		369	최봉림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5 (전하동)	방어진농업 협동조합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3	당사동	71-1	전	387	387		387	최봉림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5 (전하동)	방어진농업 협동조합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4	당사동	71-11	전	53	53	53		최봉림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5 (전하동)	방어진농업 협동조합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5	당사동	71-12	전	62	62	62		최봉림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5 (전하동)	방어진농업 협동조합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85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6	당사동	85	답	1,347	1,347	1,347		정상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31 (달동)	정용수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46, 201동 1504호	근저당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7	당사동	85-1	답	2,155	2,155	2,155		정상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31 (달동)	정용수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46, 201동 1504호	근저당권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8	당사동	87	답	2,175	2,175	2,175		여경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70, 201동 1008호(화정동)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9	당사동	88	답	2,159	2,159	2,159		진귀봉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25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계	부지	진입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	당사동	731-1	도	161	9	9		국토교통부					당초
		731-15	도	9	9	9		국(기획재정부)					변경
11	당사동	731-2	도	270	139	127	12	국토교통부					당초
		731-2	도	62	12		12	국(기획재정부)					변경
		731-16	도	14	14	14		국(기획재정부)					변경
		731-17	도	117	117	117		국(기획재정부)					변경
계				15,155	9,397	8,087	1,310						당초
				14,926	9,401	8,091	1,310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5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기14길 1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01-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3길 21	2019-12-19	이지역의옛지명이므로 지역성을뒀도로명을부 여하였다.	2004-01-05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38B 1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2길 8	2019-12-19	신기3길인근위치연계 성반영하여일련번호부 여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33-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40	2019-12-19	중산지구서쪽에위치한 도로라는의미로도도명 을부여하였다.	2013-12-30
4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28-1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도담길 21-1	2019-12-19	복이깃들고너넨한길이 라는뜻	2011-08-16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52-4	울산광역시 북구	곡리7길 7	2019-12-19	옛지명인골짜기마을명 칭사용	2018-05-10
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66-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1길 14	2019-12-19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33B 4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4길 1	2019-12-19	신기3길인근위치연계 성반영하여일련번호부 여	2018-05-1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13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명 : 염포동 도시계획시설(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동 20-2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98	10	342	
소로	1	102	10	420	
소로	1	103	10	87	
소로	3	220	6	87	
소로	3	273	6	154	

- 나. 소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성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108	소공원	북구 염포동 42일원	2,288.0	증 1.0
변경				2,289.0	
기정	7	사회복지시설	북구 염포동 44-4일원	969.0	변경없음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20일원	2,463.0	감 3.0
변경				2,46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이승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5. 사업기간 :

당초 : 2018. 06. 28. ~ 2019. 12. 31.

변경 : 2018. 06. 28. ~ 2021. 04. 30.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8. 열람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염포동	20	대	19,412.0	237.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20-2	대	127.0	12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0-3	대	109.0	1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0-4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	염포동	23	대	648.0	187.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23	대	187.0	1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3	염포동	39	전	939.0	87.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39	전	87.0	8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	염포동	40	대	258.0	201.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0	대	201.0	20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5	염포동	41	전	1,091.0	235.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1	전	236.0	23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6	염포동	42	전	585.0	437.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2	전	156.0	156.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2-1	전	282.0	28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7	염포동	43	전	430.0	19.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3	전	19.0	1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8	염포동	43-1	전	1,078.0	402.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3-1	전	144.0	14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3-4	전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3-7	전	239.0	23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3-8	전	2.0	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	염포동	43-2	전	118.0	3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3-2	전	33.0	3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0	염포동	44-3	전	71.0	71.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4-3	전	9.0	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4-6	전	62.0	6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1	염포동	44-4	전	8.0	8.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4-4	전	8.0	8.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2	염포동	47-4	전	309.0	309.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7-4	전	309.0	30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3	염포동	47-5	전	41.0	41.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7-5	전	41.0	4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4	염포동	48-6	전	522.0	522.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8-6	전	522.0	52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5	염포동	48-7	전	32.0	32.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8-7	전	32.0	32.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6	염포동	48-8	전	530.0	372.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48-8	전	4.0	4.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8-14	전	363.0	36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7	염포동	961-20	천	17.0	17.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961-20	천	17.0	1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18	염포동	961-21	천	55.0	55.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961-21	천	55.0	5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9	염포동	961-22	천	105.0	36.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961-46	천	35.0	35.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0	염포동	963-3	대	1,169.0	72.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19층 (삼성동, 골든타워)				당 초
		963-3	대	43.0	43.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963-16	대	29.0	29.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963-17	대	1.0	1.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1	염포동	44-2	천	73.0	60.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당 초
		44-5	천	52.0	52.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 경
		44-7	천	1.0	1.0	박원선	울산시 서동 523				변 경
22	염포동	48-5	임	727.0	72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당 초
		48-5	임	707.0	707.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48-13	임	20.0	20.0	염포현대 지역주택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 (진장동)				변 경
23	염포동	48-10	전	12.0	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24	염포동	961-23	천	1,594.0	1,59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당 초
		961-23	천	1,540.0	1,54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961-47	천	54.0	5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25	양정동	517-3	대	575.0	575.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당 초
		517-3	대	549.0	549.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517-5	대	10.0	1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517-6	대	16.0	16.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26	양정동	519-1	대	44.0	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27	양정동	523-25	대	212.0	21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28	양정동	523-27	대	144.0	144.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 경 없 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9	양정동	523-28	대	872.0	872.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0	양정동	556-25	임	841.0	489.0	현대보광파크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4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8동 106호	근저당권	당초
		556-31	임	488.0	488.0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118동 106호	김상근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32동 1102호	근저당권	변경
								안병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22동 1004호	근저당권	
								박재영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21번길 58, 502호	근저당권	
김종임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11동 704호	근저당권									
31	양정동	746-1	대	120.0	120.0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변경 없음
32	양정동	523-30	도	9.0	9.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3	양정동	556-28	임	108.0	108.0	국(산림청)					당초
		556-28	임	29.0	29.0	국(산림청)					변경
		556-33	임	79.0	79.0	국(산림청)					변경
34	양정동	556-29	임	109.0	109.0	국(산림청)					변경 없음
35	양정동	771-1	구	24,376.0	27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삭제
36	양정동	771-10	구	1,425.0	1,425.0	국(국토교통부)					당초
		771-10	구	764.0	764.0	국(국토교통 부)					변경
		771-13	구	15.0	15.0	국(국토교통 부)					변경
		771-17	구	646.0	646.0	국(국토교통 부)					변경
37	양정동	771-12	구	10.0	10.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38	양정동	771-2	천	210.0	210.0	국(국토교통부)					당초
		771-2	천	178.0	178.0	국(국토교통 부)					변경
		771-14	천	32.0	32.0	국(국토교통 부)					변경
39	양정동	771-3	천	103.0	10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0	양정동	771-4	구	6.0	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5)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1	양정동	771-5	구	25.0	25.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1-5	구	24.0	24.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1-15	구	1.0	1.0	국(국토교통부)					변경
42	양정동	771-6	구	44.0	4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3	양정동	771-7	구	330.0	30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4	양정동	771-8	구	108.0	108.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1-8	구	20.0	20.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1-16	구	88.0	88.0	국(국토교통부)					변경
45	양정동	772-1	천	3.0	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6	양정동	772-6	천	58.0	58.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2-6	천	34.0	34.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2-8	천	24.0	24.0	국(국토교통부)					변경
47	양정동	773-17	도	549.0	457.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3-27	도	422.0	422.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3-28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3-29	도	29.0	29.0	국(국토교통부)					변경
48	양정동	773-19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49	양정동	773-20	도	17.0	17.0	국(국토교통부)					당 초
		773-20	도	13.0	13.0	국(국토교통부)					변경
		773-31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변경
50	염포동	47-6	천	82.0	82.0	국(국토교통부)					당 초
		47-6	천	39.0	39.0	국(국토교통부)					변경
		47-7	천	43.0	43.0	국(국토교통부)					변경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6)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1	염포동	48-9	천	68.0	68.0	국(국토교통부)					당 초
		48-9	천	64.0	6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48-16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52	염포동	48-11	천	14.0	1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3	염포동	48-12	천	71.0	71.0	국(국토교통부)					당 초
		48-12	천	1.0	1.0	국(국토교통부)					변 경
		48-17	천	70.0	70.0	국(국토교통부)					변 경
54	염포동	961-18	잡	226.0	106.0	국(기획재정부)					당 초
		961-18	잡	76.0	76.0	국(기획재정부)					변 경
		961-44	잡	30.0	30.0	국(기획재정부)					변 경
55	염포동	961-29	천	125.0	125.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29	천	104.0	10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1-48	천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 경
56	염포동	961-31	천	260.0	260.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31	천	176.0	17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1-51	천	84.0	84.0	국(국토교통부)					변 경
57	염포동	961-32	천	340.0	340.0	국(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8	염포동	961-33	천	1,096.0	1,09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59	염포동	961-34	천	466.0	466.0	국(국토교통부)					변 경 없 음
60	염포동	961-36	천	670.0	670.0	국(국토교통부)					당 초
		961-36	천	445.0	445.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1-52	천	28.0	28.0	국(국토교통부)					변 경
		961-53	천	197.0	197.0	국(국토교통부)					변 경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7)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	염포동	961-37	천	1,034.0	1,034.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62	염포동	961-38	천	1,066.0	1,066.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1-38	천	13.0	13.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1-54	천	11.0	11.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1-55	천	1,042.0	1,042.0	국(국토교통부)					변경
63	염포동	961-39	천	239.0	198.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1-39	천	192.0	192.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1-49	천	6.0	6.0	국(국토교통부)					변경
64	염포동	961-40	천	144.0	144.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1-40	천	140.0	140.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1-56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변경
65	염포동	961-42	천	22.0	22.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1-42	천	17.0	17.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1-57	천	5.0	5.0	국(국토교통부)					변경
66	염포동	961-43	구	23.0	21.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1-43	구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67	염포동	963-2	잡	28.0	28.0	국(기획재정부)					당초
		963-2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변경
		963-15	잡	25.0	25.0	국(기획재정부)					변경
		963-18	잡	2.0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68	염포동	963-11	잡	391.0	173.0	국(기획재정부)					당초
		963-11	잡	174.0	174.0	국(기획재정부)					변경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8) 변경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9	염포동	963-12	잡	22.0	22.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70	염포동	963-13	잡	13.0	1.0	국(기획재정부)					당초
		963-21	잡	1.0	1.0	국(기획재정부)					변경
71	염포동	963-14	잡	342.0	342.0	국(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72	염포동	964-1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3	염포동	964-3	도	32.0	32.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4	염포동	965-1	도	75.0	75.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5	염포동	965-3	도	66.0	66.0	국(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76	염포동	965-5	도	25.0	25.0	국(국토교통부)					당초
		965-5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변경
		965-6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변경
		(당초) 합 계		67,088.0	18,065.0						
		(변경) 합 계		17,806.0	17,806.0						